

개발사업규정 일부개정(안)

개발사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,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16조, 제31조, 제86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(기술심의위원회 등) ① 공사는 단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기술업무의 개발 및 활용, 설계 및 시공기준의 타당성,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, 시공기술의 적정성, 새로운 기술 및 공법, 건설공사의 입찰방법,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,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사는 제1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개발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를 개발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4조의3(용역평가) ① 공사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용역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개발사업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신설>	제4조의 2(기술심의위원회 등) ① 공사는 단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기술업무의 개발 및 활용, 설계 및 시공기준의 타당성,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, 시공기술의 적정성, 새로운 기술 및 공법, 건설공사의 입찰방법,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,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공사는 제1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개발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를 개발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	단지개발사업 기술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 주택설계위원회를 통합하여 총칙으로 조문이동
<신설>	제4조의3(용역평가) ① 공사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② 용역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	단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용역평가 업무를 통합하여 총칙으로 조문이동

현행	개정	개정사유
제16조(기술심의위원회 등) ① 공사는 단지개발사업 필요한 기술업무의 개발 및 활용, 설계 및 시공 기준의 타당성,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.....(이하생략)	<삭제>	총칙으로 이동
제31조(용역평가) ① 공사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② 용역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	<삭제>	총칙으로 이동
제86조(주택설계위원회 운영) ① 공사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기술업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설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주택설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	<삭제>	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, 조항삭제